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3
----------	------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의자 : 김도읍 · 이우현 · 김성원  
김정재 · 이채익 · 권석창  
김명연 · 성일종 · 민경욱  
이만희 · 이학재 · 김성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곳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2항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처리 특례)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처리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